

면적변화로 세액차이가 크므로 과표적용구간의 경계에 있는 납세자간 형평유지 필요하게 되었고 실례로 가산대상구간의 경계부분에서 약간의 면적차이로 가산율이 변화되어 이에 따른 다수의 집단민원 발생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어 개선 보완 한 것이다.

※ 서울지역 아파트 사례

○ 가산동 두산아파트 : 전용면적 134.95㎡, 공용면적 : 82㎡, 97년도 신축, 위치지수 106, 철근콘크리트조

- 가산율 : 20%, 2000년도 세액 : 424,660(재산세액 : 267,390원)

○ 대림동 한신아파트 : 전용면적 114.54㎡, 공용면적 82㎡ 99년도 신축, 위치지수 106, 철근콘크리트조

- 가산율 : 10%, 2000년도 세액 : 253,290(재산세 : 135,150원)

※ 경기도 지역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사례

○ 2000년도 신축 연면적 299㎡

- 가산율 : 50%, 2000년도 재산세 : 3,110,590원

○ 2000년도 신축 연면적 297㎡

- 가산율 : 40%, 2000년도 재산세 : 2,742,060원

<조정내용>

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	가산율	가산율적용 제외부분
[단독주택]		
(6) 1구내 연면적이 165㎡이상 183㎡이하	5/100	○ 지하실 면적
(7) 1구내 연면적이 183㎡초과 198㎡이하	10/100	〃
(8) 1구내 연면적이 198㎡초과 215㎡이하	15/100	〃
(9) 1구내 연면적이 215㎡초과 231㎡이하	20/100	〃
(10)1구내 연면적이 231㎡초과 248㎡이하	25/100	〃
(11)1구내 연면적이 248㎡초과 264㎡이하	30/100	〃
(12)1구내 연면적이 264㎡초과 281㎡이하	35/100	〃
(13)1구내 연면적이 281㎡초과 298㎡이하	40/100	〃
(14)1구내 연면적이 298㎡초과 314㎡이하	45/100	〃
(15)1구내 연면적이 314㎡초과 331㎡이하	50/100	〃
(16)1구내 연면적이 331㎡초과	70/100	〃